

의안번호	
의 퇴 인	강훈식 의원
회 답 일	2024.6.19.
추계번호	24B101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9조(정년)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 다만, 2명 이상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둔 근로자의 정년(이하 “다자녀근로자 정년”이라 한다)은 65세 이상의 범위에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으로 정하여야 함(제1항 단서 신설)	의무규정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로 정한 것으로 봄(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년을 60세(다자녀근로자 정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제3항)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9조(정년) 제1항 단서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2	안 제19조의2(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	

2. 상세 사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본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평균 재직기간 등의 증가로 인건비 및 퇴직수당 등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현행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
 - 개정안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근로자의 정년(이하 “다자녀근로자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다자녀근로자의 정년이 2027년 1월 1일부터 연장됨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26년 1월 1일
 2.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27년 1월 1일
 - 개정안의 시행으로 정년이 연장된 기간만큼 기업의 인건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일반 공무원의 정년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²⁾에 규정되고, 교육공무원 및 대학교수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47조³⁾에 규정된다는 점에서 본 개정안의 시행으로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등의 정년이 변화하는 것은 아님
 -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다자녀 근로자의 경우 본 개정안의 조치에 따라 평균 재직기간 등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퇴직수당 등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가용할 수 있는 인건비 규모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여 인력을 채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 본 개정안이 시행되어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
 -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공무원에 대한 채용 규모를 유지하고, 이들에게

1)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2)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3) 제47조(정년) ①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동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평균 재직기간 등이 증가하여 인건비 및 퇴직수당 등의 증가로 인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정년의 연장과 고용효과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정년 연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기업 및 산업의 규모, 노사조합의 교섭력 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난다고 평가된다는 점과⁴⁾ 장래에 발생할 정년 연장에 따른 채용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곤란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남 희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남 희	02-6788-3737	nhee@nabo.go.kr

4) 고용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60세 정년의무화의 고용효과」, 2020.